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ne 10,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영국: Pillar Two 등록에 대한 실무지침

2024 년 5 월 20 일, 영국 세무당국은 영국 내 Pillar Two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한 Pillar Two 등록에 대한 실무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실무지침에는 영국 내 Pillar Two 추가세 온라인 서비스 등록방법, 필수제출 자료목록, 신고 관련 변경사항 고지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지침 공표

개요

한 개 이상의 그룹법인이 영국에 소재하면서 직전 4 개 회계연도 중 최소 2 개 회계연도 동안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간 연결매출액이 7 억 5 천만 유로(약 1.1 조 원) 이상인 경우 영국 내국 추가세와 다국적 추가세에 대한 Pillar Two 등록요건이 성립됩니다. 만약 추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의무는 필수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한

신고법인은 영국 세무당국의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된 최초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고법인은 기본적으로 최종모기업이 되지만, 최종모기업은 타 그룹법인을 신고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등록사항

신고법인은 영국 세무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모기업(또는 신고법인)의 법인명 및 등록된 주소;
-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납세자번호;
- 등록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법인의 영국 및 해외 소재 여부에 대한 확인;
-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연도 시작일 및 종료일;
- 다국적기업그룹의 담당자(1-2명) 또는 팀의 연락처;
- 다국적기업그룹의 우편 주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제출

등록이 완료된 후, 실무지침에 따라 최초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는 늦어도 다음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가 신고된 최초 회계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경우, 2026년 6월 30일; 또는
- 글로벌최저한세가 신고된 최초 회계연도가 2024년 12월 31일이 지나서 종료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

Comment

Pillar Two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규정준수를 준비하면서 추가세액 효과 분석을 실시 및 업데이트 하는 등 Pillar Two 제도에 대한 준비성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illar Two 등록기한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영국 세무당국이 공표한 해당 실무지침을 통해 Pillar Two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은 영국 내

등록의무 및 요건을 이해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신고법인을 지정하고, 등록기한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Pillar Two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활용성 및 국가 간 공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고법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와 국세청장 또는 권한 당국 간의 협정으로, 특정 기간 동안 납세자와 해외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해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정 가격(Arm's Length Transfer Price)을 결정하는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이전가격과 관련된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MIRB(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최근에 Advance Pricing Arrangement Guidelines("APA 지침 2024")을 업데이트하여 MITA(Malaysia Income Tax Handbook) 제 138C 조 및 소득세 규칙 2023("APA 규칙 2023")의 절차적 및 행정적 요구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업데이트된 APA 지침 2024는 주로 2023년 5월에 발표된 APA 규칙 2023에서 도입된 변경 사항에 맞춰 APA에 대한 지침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APA 신청에 대해 추가 조건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PA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PA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a) 대상 거래의 운영 수익이 RM100 백만 과세 사업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b) 제안된 대상 거래의 수치가 매출의 50%를 초과하거나(매출의 경우), 총 구매의 50%를 초과하거나(매입의 경우), 또는 기타 거래의 총 가치가 RM25 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 지원과 관련된 경우,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MIRB의 이전가격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모든 대상 거래는 과세 대상 소득과 관련되어야 하며, 1986년 투자촉진법(Act 327) 및 MITA(Act 53)에 따라 면세되는 소득, 또는 조약 파트너 국가에서 면세되는 소득과 관련된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APA 목적으로 면세 거래와 비면세 거래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감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거나 특별 위원회 또는 법원의 관련 항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AP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납세자는:

i.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소 3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는

ii. 36 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의 경우, 대상 거래와 관련된 사업 활동이 최소 12 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6. 기능, 자산 및 위험(FAR)과 사업 모델이 동일한 납세자의 경우, 제안된 벤치마킹 분석의 영업 마진이 평균 가중치 마진의 3% 이상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i. 기존 사업의 경우, 지난 5 년 동안의 평균 가중치 마진; 또는

ii. (5)항에 언급된 납세자의 경우, 최소 3 년 동안의 평균 가중치 마진

7. FAR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무형 자산의 이전 또는 주요 FAR 의 전환 또는 중요한 인적 기능의 이전이 없는 한, 영업 마진이 5% 이상 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PMG Observations

APA 지침 2024 는 APA 신청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건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안된 벤치마킹 분석을 기반으로 한 MIRB 의 이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조건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 새로운 조건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에 대한 세무 당국의 관용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기존의 말레이시아 판매업자가 제한적 위험 판매업자로 구조조정될 경우, 이익률이 5%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이전가격 목적상 '고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APA, 사업 구조조정 또는 기타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벨기에: 다국적 및 대규모 국내 그룹을 위한 GloBE 등록 요건

벨기에 세무 당국은 GloBE 등록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그룹의 벨기에 상업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최근 개정된 벨기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 년 5 월 15 일의 등록 절차에 관한 왕령은 아직 벨기에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지만, 벨기에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등록 마감일

벨기에 최저 과세법 적용 대상인 다국적 기업(MNE) 및 대규모 국내 그룹은 벨기에 상업 등록부(즉, Crossroads Bank for Enterprises - CBE)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통지는 해당 그룹이 벨기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법의 적용을 받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요청된 정보를 수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첫 번째 등록 통지 마감일은 벨기에 관보에 왕령이 발표된 후 45 일 이후로 설정됩니다.

등록 책임

등록 책임은 다음 기관에 있습니다:

1. 벨기에 최종 모회사(UPE)가 있는 경우: 해당 UPE가 등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여러 벨기에 UPE가 있는 경우: 다른 UPE가 지정한 UPE가 등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벨기에 UPE가 없지만 벨기에 구성원 법인(CE)이 있는 경우: 해당 벨기에 CE가 등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벨기에 UPE가 없지만 여러 벨기에 CE가 있는 경우: 다른 CE가 지정한 벨기에 CE가 등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명의 경우, 지정기관의 임명은 다른 벨기에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전자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고 전자 서명을 포함하여 공식화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벨기에 UPE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UPE가 벨기에에 없고 벨기에 상업 등록부에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이 UPE도 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즉, 그룹의 번호 외에 추가로 부여됩니다).

필요한 정보

등록 양식은 각 그룹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I: 다국적 기업그룹 또는 대규모 국내 그룹

- 그룹의 고유 이름(UPE의 이름과 다르게 설정해야 함)
- 회계연도
- UPE의 주소
- UPE의 연락처 정보

Part II: 연결재무제표

- GloBE 정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유형
- 적용된 회계 기준
- 사용된 통화
- 공시 여부

Part III: 소유 구조

- 모든 UPE, 중간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의 목록
 - 모회사가 벨기에에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가 소유한 모든 벨기에 및 해외 법인의 목록
-

- 그룹이 처음 GloBE 적용 대상이 된 회계연도의 첫날(예: 회계연도가 달력 연도인 경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존재했던 소유 구조
- 각 목록에 있는 법인의 GloBE 상태와 소그룹을 표시해야 하며, 이 분류는 OECD의 GloBE 정보 보고서 제안과 일치해야 함

Part IV: 연락처 정보

- 등록 책임을 지는 법인의 연락처 정보
- 임명에 따른 경우, 작성된 위임장 양식도 증빙으로 제공

이 정보들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 서명과 함께 공식화된 위임장 양식도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적용 대상 그룹은 [MyMinfin](#) 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벨기에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은 등록 책임이 있는 벨기에 법인의 "MyMinfin" 계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XML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세무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XML 생성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통지가 이루어지면, 벨기에 세무 당국은 해당 그룹을 벨기에 상업 등록부에 등록할 것입니다. 그룹의 기업 번호는 통지를 한 법인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벨기에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중 5394 (2024.04.11)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특정 해외생산법인과 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조사)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부속품의 제조·재생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 2개의 생산공장과 헝가리, 미국, 중국(가흥·강소·중경) 및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6개의 생산법인(이하 각각 "헝가리생산법인", "중국생산법인" 또는 "인

도네시아생산법인" 등이라 하고, 통칭 "해외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약 30여개의 해외판매법인 등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수행함

- 청구법인은 해외생산법인에게 타이어 생산기술, 브랜드, 광고 등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순매출액의 5%(4%의 제조기술대가 및 1%의 브랜드 대가, 비교가능제3자가격 방법 적용)를 사용료(로열티)로 수취함 (미국생산법인은 2017년 10월 공장이 준공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료 소득이 없음)
- 처분청은 헝가리생산법인과 위 무형자산 사용거래 외에 글로벌마케팅지원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독특한 고부가가가치가 결합된 무형자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각 개별 거래를 통합한 다음,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잔여이익분할 방법(이하 "거래이익분할방법" 또는 "이익분할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함 (그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율은 9% 상당임)
- 이에, 청구법인은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 위 무형자산 거래도 형태와 실질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거래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조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간접경비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5-2017 사업연도분 000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 한도 재계산 청구부분만 경정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① 청구법인은 헝가리생산법인과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게 동일하게 타이어 생산 기술, 브랜드, 광고 등의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순매출액의 5%를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동일한 기능위험의 해외생산법인간 거래에는 동일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자산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각 법인에게 제공하는 무형자산은 그 내용과 실질이 동일하고, 각 법인들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또한 동일함 - 조세심판원 또한 서로 다른 해외법인 간에 설립목적, 운영사업과 수행기능·부담위험·사용자선이 유사하다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동일 법인 내 서로 다른 사업부가 동일한 기능과 위험을 부담한다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p>정상가격 산정은 개별 기업별로 판단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법 상 이전가격 조정 규정(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외 가격으로 소득 및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임. 이는 해당 국제거래의 국외특수관계인과 국내 거주자 사이의 문제로서, 이전가격의 조정 여부는 개별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듯 국내 거주자가 어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이전가격 조정을 하였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국외특수관계인과 이전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음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해석례 등은 정상가격에 따른 조정은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을 모두 포함한다는 일반론이거나,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법과 기획재정부 모두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모두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 및 감액경정(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임 -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취사선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침해된 납세자의 과세형평을 바로잡아야 함 	<p>였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와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함께 있는 경우 사업연도를 골라 익금산입하는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어디까지나 국내 거주자와 특정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를 전제한 것임</p>
<p>청구법인이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 수행하는 무형자산 거래와 헝가리법인과 수행하는 무형자산 거래는 서로 동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과 각 생산법인간 무형자산 허여계약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모든 해외생산법인에게 동일한 타이어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무형자산을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허여함 - 각 생산법인은 설립목적, 운영사업, 수행기능, 부담위험에 있어 매우 유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매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입증한 바 있으며, 각 해외법인의 유형적 조직과 수행업무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청구법인은 헝가리생산법인 외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 매출액 또한 헝가리생산법인의 매출증가와 그 폭이 유사하거나 더 큰 증가폭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시장위험 및 재고위험 관리 수준은 모든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유사한 수준임 - 무형자산허여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 따라 5가지 요건을 따져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취급재화의 차이로 인해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이유는 없음 	<p>해외생산법인 간에 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생산법인과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생산라인 구성, 가동률, 매출규모 등에 있어 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 - 청구법인은 유럽지역 내수판매 목적으로 헝가리생산법인 설립 후 3차례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물량이 증가하자, 유럽지역 공급물량 감소 조정을 통하여 헝가리생산법인의 시장위험 및 재고위험을 상당 부분 관리함. 결과적으로 헝가리생산법인의 이익률은 일상적인 생산활동의 비용을 보상받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소득이전요인(낮은 유효세율 등)에 의하여 헝가리생산법인에 이전된 소득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 헝가리생산법인은 000제품 위주로 생산하여 판매법인을 통해 유럽 전지역에 판매함. 반면에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000제품 생산비중이 높고, 판매법인을 통한 내수 및 수출시장 판매를 병행하며, 이러한 매출구조, 생산품 구성, 시장특성(저가제품 수요 위주) 등의 영향으로 낮은 이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경제적 특성은 청구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정의될 수 있음 - 각 법인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잔여이익분할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통상이익 및 통상이익 배부 후 잔여초과이익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옴 - 청구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헌도는 헝가리생산법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더 작아진 잔여이익 중 청구법인에 귀속될 잔여이익은 더욱 줄어들게 되며,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잔여 초과이익 중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잔여이익은 기 보상금액(사용료 수취금액)보다 작으므로, 초과보상액에 대한 감액 조정이 발생됨 - 신규 설립하여 2017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 미국 생산법인과와의 사용료계약에서는 다른 해외생산법인과 달리 기술제공 사용료가 고정로열티(4%)가 아닌 변
<p>헝가리생산법인에게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되었다면, 무형자산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도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양측이 특수한 무형자산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헝가리생산법인의 무형자산 기여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헝가리생산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도 응당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처분청은 헝가리생산법인이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낮은기능)에 해당하나, 중국·인도네시아생 	

<p>산법인은 라이선스 제조업자(높은기능)에 해당하므로 이익분할방법 적용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이익분할방법은 거래의 양 당사자들이 모두 주요한 무형자산을 보유하면서 높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수행기능과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헝가리생산법인보다 높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익분할방법 적용의 타당성을 방증함</p> <p>- 처분청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이전가격조정 필요성이 전제된 이후의 문제라 주장하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의견이며 오히려 특정법인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한 것을 자인하는 것임</p>	<p>동로열티(정상가격 초과분)로 결정되었는데, 새로 설립되거나 생산시설 증설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해외생산법인은 해당 지역에서 청구법인의 공급물량 조정을 통하여 시장위험·재고위험이 상당 부분 관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고정로열티 사용료계약은 이전가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미국생산법인과는 변동로열티 사용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헝가리생산법인에 대해서는 미국생산법인과 사용료계약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p>
--	---

4) 판단

- 처분청은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경우 헝가리생산법인과 경제적 특성(사업행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잔여이익이 음수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함
- 비교가능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청구법인도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그 중 헝가리생산법인과 무형자산 사용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까지 헝가리 과세당국과 논의를 진행한 점,
- 그러던 2018년 8월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헝가리생산법인의 경우, 다른 해외생산법인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영업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무형자산 사용 거래 외에 청구법인이 지원하는 글로벌마케팅 및 고부가가치용역을 특수한 형태의 무형자산 거래로 통합하고, 이와 비교가능거래가 없다는 사유로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 청구법인은 사업주관자로서 해외생산법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있고, 각 해외생산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양쪽이 함께 실현한 이익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경제적 특성이 헝가리생산법인에 비해 청구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라이선스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면, 헝가리생산법인과 거래보다 중국·인도네시아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 거래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쌍방이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일부상황에서는 결합손익)을 각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써, 그 결과가 항상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청구법인과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상대적 공헌도 등의 고려사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3 관세

대법원 2024.4.16. 선고 2016 두 36196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일본의 반도체 제조설비 업체인 OO일렉트론 주식회사(TEL)의 국내 자회사로서, TEL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판매한 설비의 설치, 조립,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TEL과 국내 고객사 간의 반도체 제조설비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르면, TEL은 설비를 국내 고객사에 이전·설치하고 성능 검수를 완료한 후 판매대금을 받게 되어 있다. 판매대금의 90%는 설비가 수입될 때 지급되고, 나머지 10%는 최종 검수 후 지급되며, 무상보증기간(약 2년) 동안의 유지보수는 무료이나 그 이후에는 유료로 제공된다.

다. TEL은 이러한 스타트업 서비스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고와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TEL을 대신해 국내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스타트업 서비스는 설비 설치장소 확정, 조립·설치 작업 및 성능 확인 작업으로 구성된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TEL로부터 무료로 수입하여 국내 고객사에 설치하였다. 이 작업에 대한 대가는 TEL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받았다.

2. 유지보수 서비스는 무상보증기간 이후 유료로 제공되며, 이를 위해 필요 부품을 TEL로부터 이전가격으로 수입하여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2014년 2월 8일까지 TEL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2,771건의 부품에 대해 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국내 고객사는 TEL로부터 직접 설비를 수입하면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것의 의미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관련 법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여섯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제30조에 따라 실제 지급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0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31조 제1항은 제30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며, 이때 거래 조건과 가격 조정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제거래시세 등을 반영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거래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거래 단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업적 수준이 같음을 의미하며,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 다르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한 판단

이 사건 판매계약은 TEL이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와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으로, 이 사건 물품은 이 판매계약의 일환으로 수입된 것이다.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 기준은 TEL과 국내 고객사 간의 판매계약이다.

원고는 TEL의 계약 이행을 보조하는 역할일 뿐, 독립된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와 TEL 간의 서비스계약은 판매계약의 부수적인 계약으로, 이 사건 물품 자체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거래 단계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물품은 TEL로부터 국내 고객사에 직접 판매된 반면, 유상수입물품은 TEL에서 원고를 거쳐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된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은 TEL과 국내 고객사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으나, 유상수입물품의 가격은 TEL과 원고 간의 내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다. 결론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KPMG 의견]

본 판결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의미에 대해, 본 판결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 즉 도매단계나 소매단계와 같은 상업적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며,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 각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 다를 경우 거래단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본 판결은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 시 무상수입한 물품과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시 유상수입한 물품이 거래 당사자와 거래단계 등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가격 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판단했습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